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남 창 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

2016년 6월 국가건설기준 내용 체계 전면 개편으로 국토교통부 건설기준 코드가 통합 제정되었고, 2018년 5월 서울특별시 상위 기준 코드화로 인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국토교통부 지침 및 서울시 전문시방서 규정과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